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구축 추진배경 및 방향

이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2003년 외래 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연구에서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약물사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2005년 3월, 2007년 4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병용금지 및 연령금지 의약품에 대한 고시를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04년 8월부터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료비청구 심사단계에서 부적절한 약물투여 여부를 확인하는 후향적 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청구 S/W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요양기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병용금지 의약품 투약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년 초부터는 환자에게도 금지의약품 투약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자율적 점검만으로는 금지의약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에게 투약된 후 심사단계 사후 점검 실시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사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일 요양기관의 각 진료과목 간 또는 타 요양기관 간 처방조제로 인해 의약품 다중복투여 및 병용금지 의약품 투여가 발생하고 이는 사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투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단계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회 등 대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병용금지 의약품 투약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팀이 구성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3단계로 추진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이 마련되었다.

'08년도에는 1단계로 동일 요양기관 내 동일 처방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등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09년부터 2단계로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로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까지 완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시범사업 및 의·약 관련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